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2-08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도12571 가.절도 나.절도미수 다.재물손괴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소영(국선)
원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2. 9. 15. 선고 2022노41, 2022노633(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2. 16.

주 문

원심이 2022. 10. 4.에 한 경정결정을 파기한다.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경정결정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 법원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



명한 때'에 한하여 재판서의 경정을 통하여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1항). 그러나 이미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위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21439 판결 등 참조).

판결은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데(대법원 1981. 5. 14.자 81모8 결정 참조),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5도 655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제1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증 제1 내지 3호의 몰수를 선고하였고, 제2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제1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3) 원심은 제1심판결들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병합된 위 각 사건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파기하고, 2022. 9. 15.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판결서 원본에 의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원심판결서 원본의 주문에는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라고만 기재되어 있다.

5) 이후 원심은 2022. 10. 4. 원심판결의 주문에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



한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 사건 경정결정은 당초 원심이 선고하지 않았던 주문인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한 몰수'를 추가하는 것으로(원심 선고기일의 공판조서에는 '판결서 원본에 의하여 판결 선고'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심이 판결서 기재와 달리 선고기일에 피고인에게 몰수를 선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미 선고된 원심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심의 이 사건 경정결정은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서의 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파기되어야 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515 판결 참조).

원심이 임의적 몰수의 대상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에 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의 양형판단에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경정결정을 파기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_____

 대법관 박정화 _____

주 심 대법관 김선수 _____

 대법관 노태악 _____